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3 조 (주관)

평생교육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제 4 조 (교육 단위 기간)

평생교육은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한내과학회, 지회 및 분과학회
2.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지회
3. 내과전공의 수련병원
4. 기타 해외학회를 포함한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

제 6 조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및 실습
2. 국내·외 학술대회
3. 인터넷-온라인 교육
4. 기타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제 7 조 (교육 평점)

1. (평점의 신청)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평점의 인정) 본 학회는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3. (평점의 공지)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인정받은 평점을 교육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본 학회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 (평점의 산정) 각 교육내용에 대한 평점 산정은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 8 조 (교육 이수의 관리)

1. 교육결과의 보고: 내과전문의는 최근 5년의 교육주기 동안 받은 평생교육인정 평점을 본 학회에서 집계하여 평가한다.
2. 평생교육 이수증의 수여: 본 학회는 교육주기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예외 규정)

5년 기간 동안에 해외거주, 휴-폐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평점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0 조 (부칙)

1. 본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평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시행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평생교육의 대상은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

제 2 장 교육의 내용 및 수행 방법

제 3 조 (교육의 내용)

1.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내용은 내과 의사에게 필요한 의학지식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강연, 지상 강좌 및 실습과 인터넷-온라인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의학지식 외에도 의료정책, 의료사회학, 의료정보학, 의사윤리, 교양과목 등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 내용도 20% 이내로 포함될 수 있다.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인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학회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학술대회, 교육강좌, 워크샵, 심포지움 및 실습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여야 한다. 내용이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이어야 하며, 최신 지식이나 기술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한내과학회는 보수교육(이하 '평생교육 연수강좌'로 칭함)을 위한 학술 강좌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4. 인터넷-온라인 교육은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 온라인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강의와 자가학습을 수강한 경우에 인정하며 별도의 수강 규정에 따른다.
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대한내과학회의 각 분과전문의 교육 규정에 인정된 학술대회에 한한다.
6. 보수 교육의 목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의 교육 내용을 습득한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를 인정한다.
7.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 웹페이지의 동영상이나 교육자료 등의 게재물에 대해 그 내용을 습득 후에 실시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거나 토론 주제를 제시한 경우로, 해당 학회나 대한내과학회에 그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제 4 조 (교육 계획 제출 및 승인)

1.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에 평생교육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3. 교육은 시행 기관의 승인과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인정한다.

제 5 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장은 교육 실시 후 대한내과학회의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2주일 이내에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1. 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있어 별지 서식의 교육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교육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는 교육등록대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별지 서식의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 평점카드로 대치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의 평가 방법

제 7 조 (교육 평점의 산정)

평생교육 평점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 제5조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고 그 내용이 위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한다.

1.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의 교육종류별 최고 평점과 1년에 취득 가능한 평점은 다음과 같다(단, 1일 교육 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교육종류	평점
1. 대한내과학회 평생교육 연수강좌	1평점 / 1시간
2. 교육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및 실습	1평점 / 1시간
3. 국내 학술대회	1평점 / 1시간
4. 인터넷-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0.5평점 / 1강좌
5. 기타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해당 교육 종목 판단에 따름

2. 국제 학술대회는 관련학회로 1일 1평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3. 대한내과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임상초음파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는 1일 4평점을 인정하고, 연 2회 개최되는 평생교육은 1일 2평점을 인정한다.

제 8 조 (평생교육의 평가)

1. 평생교육은 최근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을 1년으로 한다.
2. 본 학회는 최근 5년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평생교육 우수 내과전문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3. 평생교육 1주기 동안 120평점을 취득한 회원은 '평생교육 최우수 내과전문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4. 평생교육 1주기 동안의 평점에서 인터넷-온라인 평생교육 평점은 총 취득 평점의 50%까지 인정한다.

제 9 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0조 (부칙)

1. 본 규칙은 내과전문의 교육 시행 규정 결의와 함께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1년 1월부로 교육위원회 수정 및 이사회 추인으로 시행한다.
3. 본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개정되어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16년 5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개정되어 시행한다.